

종합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환동해산업연구원 -

2023. 상반기

□ 처분요구일람표

1.	노동조합 사용자 참여 관련	(통보)	3
2.	회의비 지출 부적정	(주의)	5
3.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7
4.	수익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0
5.	출장업무 소홀 및 여비규정 개선	(통보)	13
6.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16
7.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점수 정산 부적정	(시정)	18
8.	관사 임차료 지급 부적정	(시정)	20
9.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시정)	25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노동조합 사용자 측 참여 관련
소 관 청 환동해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에서는 인사, 감사, 노무,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제4호에 가목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환동해산업연구원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르면 ■■■■■■는 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종 협약의 체결,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제·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산하조직의 업무지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직원의 임용·복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물품의 구매, 계약 등 지출과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법인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관리직 근로자들이 사용자¹⁾나 이익대표자²⁾에 해당하지

1) 판례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판단함(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51139 판결, 대법원

않아야 하며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를 노동조합에 참가함을 허용하지 않는 법 제정의 기본취지는 이러한 자의 노동조합 가입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여 노조를 어용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또한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사용자의 주요 노무관련 비밀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의 ◆◆◆◆ 파트리더 등 00명의 경우 인사, 감사, 노무, 회계 등의 업무책임을 맡고 있고, 대내외 시행문서 상 팀장으로서 하위근무자들의 문서를 결재하는 등 환동해산업연구원 직제규정상 책임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동해산업연구원 근로자들을 지도·감독 관리하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노조활동에 따른 노조 어용화 방지 대책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균형적인 업무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다수)

2) 판례는 이익대표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자 등과 같이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판단함(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회의비 지출 부적정
소 관 청 환동해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 〰〰〰〰〰〰
내 용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 〰〰〰〰〰〰, 〰〰〰〰〰〰에서는 해양수산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동해산업연구원 「회계규정」 제49조에 따르면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1조 따르면 증빙서류의 작성은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청구서, 계약서, 대조필, 부기증명, 기타 증빙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환동해산업연구원 〰〰〰〰〰〰, 〰〰〰〰〰〰, 〰〰〰〰〰〰에서는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회의개최 후 회의 참여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참석자의 식사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청구된 금액에 대한 카드결제 후 해당금액을 지출결의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0000.00.00. ~ 0000.00.00. 까지 00건의 회의비 지출과 관련하여 〰〰〰〰〰 〰〰〰〰〰〰 파트리더 〰〰〰 등 00인은 관계자 회의 개최 후 실제 참석자 식사비 000,000원 대비 000,000원을 초과한 000,000원을 집행하였고, 〰〰〰〰〰 〰〰〰〰〰〰 파트리더 〰〰〰 등 00명은 회의 개최 후 식사일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사 후 미 정산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000,000원을 허위 결제하고, 식사 일정 취소로 향후 회의를 대비한 선결제와 내부기관 담당자만 참석한 식사에 회의비 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 과정 담당자인

●●●은 해당 과정 ●●● 종료 후 식사제공을 위해 급량비로 000,000원, 업무추진비 000,000원을 동일 건에 대해 이중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 ① 회의비 지출 등 예산회계 업무 및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 ●●, △△△, ◇◇◇◇◇, ㉟㉟㉟, ○○○○○, ▽▽▽▽▽
■■■은 환동해산업연구원 「인사규정」 제39조에 따라 ◆◆◆ 처분하시고,
- ③ ◆◆◆◆◆, ◇◇◇◇◇, ▨▨▨, ◆◆◆◆◆, ■■■■■,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환동해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 부적정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서는 '0000 ●●●●● 및 ◆◆◆◆◆ 용역'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0000.00.00. 계약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0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르면,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그 중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계산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자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연구원 ●●●●●에서는 '0000 ●●●●● 및 ◆◆◆◆◆ 용역' 협상

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위해 0000.00.00.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했고, 당시 참석한 7명의 위원은 제안서를 제출한 00개의 업체에 대해 아래 [표1]의 평가 당시 채점표와 같이 평가했으며, 0000.00.00.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없이 0000.00.00.을 1순위 협상대상자로 결정·보고한 후, 0000.00.00. 계약체결하였으나, 0000.00.00. 감사일 현재 해당 채점위원들의 평가표를 재채점한 결과, 0000.00.00.이 85점, 0000.00.00.의 채점점수는 88.2점으로 0000.00.00.를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야함에도 2순위 업체인 0000.00.00.을 1순위 협상대상자로 하여 계약체결 한 사실이 있다.

[표1] 0000 00000000 및 0000000000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비교

구분	평가 당시 채점표		구분	재채점 결과	
위원	00000000	00000000	위원	00000000	00000000
A	48	45	H	59	44
B	39	38	I	45	50
C	50	47	J	42	48
D	53	42	K	44	53
E	49	44	L	47	49
F	44	47	M	47	50
G	50	59	L	38	39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최종결과	48.2	45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최종결과	45	48.2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합산점수	40	40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합산점수	40	40
최종점수	88.2	85	최종점수	85	88.2
최종결과	A		최종결과	B	

그 결과, 정상적으로 합산점수를 계산했을 경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어야 할 0000.00.00.가 우선 협상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과업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등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하는 당초의 목적이 훼손되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평가 미이행

연구원 00000000에서는 ‘0000년 0000000000 0000.00.00. 용역’ 등 00개 용역을 재공고입찰에 부쳤음에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공고 시에 입찰공고문에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야하고, 제안요청서에도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제안서에 대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연구원 〇〇〇〇〇에서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재공고 입찰에 부쳤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고절차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기준을 충족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연구원 〇〇〇〇〇에서는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0000년 △△△△△△△ ◆◆◆◆◆ ●●●●● 용역’ 등 00건의 사업을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계약 상대자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심도있게 평가하지 못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려던 당초 취지가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 ①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안서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을 환동해산업연구원 「인사규정」 제39조에 따라 ▼▼▼ 처분하시고,
- ③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을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환동해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 ◆◆◆◆◆에서는 ‘0000년 ■■■○●●●●●●●●●●●●●●●●●● 사업’을 1인 수의방법으로 계약체결했다.

1.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2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1인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하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용역의 경우는 지정정보 처리장치(g2b)를 통해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 ◆◆◆◆◆에서는 [표]와 같이 품의 금액(부가세포함)이 00,000천원인 해당 계약을 추진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했었어야 했다.

[표]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미징구 내역

(단위 : 천원)

계약명	계약일자	예정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	재정보증 계약담당자	실제 계약업무 처리자	비고
0000년 ■■■●●● ●●●●●● 사업	'00.00.00.	00,000	00,000	●●●●●●●● (대표 : ◆◆◆)	■□■	◇◇◇ (▲▲보조원)	

그런데 해당 계약을 추진할 당시 지정정보 처리장치(g2b)를 통해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는 과정을 미 실시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경상북도 소재 유일한 해양교육기관)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다수의 업체에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계약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계약업무 담당자가 아닌 자가 계약체결

연구원 「회계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위 [표]와 같이 '0000년 ■■■●●●●●●●●●● 사업' 계약체결업무를 내부 업무분장 상 용역 및 물품구매, 공사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지원파트 소속 직원(■□■)을 통해 진행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연구원 ◆◆◆◆◆에서는 계약담당자가 부재중이고, 계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계약담당자도 아니며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략기획파트 소속 직원(◇◇◇)이 담당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연구원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 등 업무를 처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조치할 사항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주의)
- ② ●●●●● △△△△△ □□□를 환동해산업연구원 「인사규정」 제39조에 따라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 ▲▲▲, ◆◆◆은 3일 중 00일 오후에만 학회에 참석하고, 나머지 2일은 출장 이동 및 □□□□□□학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등 출장업무 수행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당해 출장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무기강 확립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여비규정 개정 권고

연구원 □□□□□에서는 0000.00.00. ‘0000년 □□□□□ ◆◆◆ 출장’ 시 숙박한 직원 모두에게 1인당 50,000원을 지급결의 했다.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의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등을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2에 따르면 숙박비는 1박당 실비를 지급하고, 제2호의 경우 지역별로 상한액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 □□□□□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실제로 숙박에 소요된 경비만을 출장여비로 지급결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연구원 □□□□□에서는 0000.00.00. ~00.00. 00박 00일동안 진행된 ‘□□□□□ ◆◆◆ 참가’ 출장여비 지급 과정에서 실제 숙박비 000,000원이 아닌 리조트에서 함께 숙박한 00명에 대해 1인당 50,000원씩 숙박비 000,000원을 지급 결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 ① 출장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업무의 수행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여비지급의 취지에 맞게 출장에 실제 소요된 금액 이상의 여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여비규정」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 ② ◼◼◼◼◼ ◼◼◼◼◼◼ ◻◻◻, ◆◆◆을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환동해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소속직원들에게 매월 급여에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환동해산업연구원 「수당 규정」 제7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7장-Ⅲ-1에 따르면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 기관의 장은 취학이나 요양 등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급액은 배우자, 직계존비속³⁾, 자녀로 구분⁴⁾되어 있다.

그리고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부양가족변동신고서를

3) (지급나이 기준) 직계존속 :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직계비속 : 만19세 미만

4) 배우자 : 월 40,000원, 직계존·비속 : 1명당 월 20,000원, 자녀 월 20,000원 ~ 월 100,000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 소속직원은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변동 신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장은 부양가족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부터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있는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가족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을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및 기준연령 초과한 직계비속 등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있는 소속 직원 00명에게 가족수당 0,000,000원을 부당 지급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직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가족수당 지급 시 반영하여야 했다.

그런데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0000. 00월부터 0000.00.00. 감사일 현재까지 부양가족 변동사항에 대해 한번도 점검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0,000,000천원은 지급받은 자로부터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선택적 복지점수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환동해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에서는 소속 직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동해산업연구원 「수당 규정」 제9조2에 따르면 선택적복지제도 적용 대상은 연구원의 모든 직원으로 하며 지급 방법은 별도 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동해산업연구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세칙」 제6조에 따르면 기본 복지점수는 소속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근속년수⁵⁾에 따라 변동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세칙 제3조에 따르면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과면·휴직·과건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휴직 및 면직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고, 복직한 경우 해당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5) △ 기본점수 : 900점, △ 근속점수 : 근속 1년당 10점(※ 1점 = 1,000원), 최대 10점

그런데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0000 ~ 0000년 기간 동안 휴직자 등 00명이 선택적 복지점수 0,000천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를 정산하지 아니하여 복지점수 0,00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점수 000천원은 지급받은 자료부터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관사 임차료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하 ‘환동해산업연구원’ 이라 한다)에서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고자 환동해산업연구원 「관사관리규정」, 「관사관리지침」 및 「관사 지원금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임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I. 예산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II.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환동해산업연구원 「관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관사라 함은 법인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원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부지,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환동해산업연구원 관사 계약담당자는 관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관사 계약상대자와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고, 직원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주택 구입자금 및 주택 전세자금의 대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사무관리비, 관사임차료)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주택 구입자금 등을 보조하여야 했다.

그런데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0000.00.00. 「관사 지원금 운영 지침⁶⁾」을 근거 법령이나 규정도 없이 제정하여 0000. 00월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관사(시설) 임차료로 사용가능한 세출예산(사무관리비, 관사임차료)을 집행하여 법인 명의로 관사를 임차하는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격의 예산으로 사용하여 주택 매입자금 및 주택 전세자금을 직원에게 지원하였다.

[표1] 관사 지원금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6) 관사 지원금의 금액은 4천만원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10년 단위로 하며 연장할 수 있음

연번	성명	대부일자	대부금액	대부용도	주택소재지	비고
합계	00명		000,000			
1	△△△	0000.00.00.	00,000	□□		
2	◇◇◇	0000.00.00.	00,000	□□	■▲군 ■▲읍면	
3	△△△	0000.00.00.	00,000	□□	■▲군 ■▲읍면	
4	■▲■	0000.00.00.	00,000	□□	■▲군 ■▲읍면	
5	○○○	0000.00.00.	00,000	□□	■▲군 ■▲읍면	
6	△△△	0000.00.00.	00,000	□□	■▲군 ■▲읍면	
7	■▲■	0000.00.00.	00,000	□□	■▲군 ■▲읍면	
8	□□□□	0000.00.00.	00,000	□□	■▲군 ■▲읍면	배우자 명의
9	■▲■	0000.00.00.	00,000	□□	■▲군 ■▲읍면	

* 환동해산업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사 지원금 관리 부적정

환동해산업연구원 「관사 지원금 운영 지침」 제1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관사 지원금 운영 지침」은 환동해산업연구원의 관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사 지원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고, 관사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지원주택에 직원 및 부양가족 이외의 자가 거주하는 경우 및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사 지원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고, ○○○○○○은 임차 지원업무 실적을 매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환동해산업연구원 「관사 관리 지침」 제7조에 따르면 관사에 입주한 자는 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주소지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관사 지원금을 지원받은 직원들에 대해 관사 거주여부 및 주소지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관사 지원금 일시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사 지원금을 상환 받아야 한다.

그런데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관사 지원금을 지원받은 직원들에 대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아래 [표2]와 같이 일부 직원들이 당초 임차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을 0000.00월 감사일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들의 관사 지원금을 상환 받지 않았다.

[표2] 관사 지원금 일시상환 대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성명	대부일자	대부금액	대부 용도	전세계약주소지	현재주소지	비고
합계	00명		00,000				
1	●●●	0000.00.00.	00,000	◆◆	●●군 ●●읍	●●군 ■■면	0000.00.00. 이전
2	●●●	0000.00.00.	00,000	◆◆	▲▲군 ▲▲읍	◇◇군 ◇◇읍	0000.00.00. 이전

* 환동해산업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3. 관사 지원금 지원 부적정

환동해산업연구원 「관사 지원금 운영 지침」 제5조, 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지원금 신청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보증인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소득이 있는 자로써 지원금 상환 잔액에 대하여 대부자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관사 지원금 운영 지침」은 직원의 복리 후생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사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관사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했다.

그런데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위 [표1]과 같이 0000.00.00. ■■■■■■■■ □■■■■■ ◇◇◇에게 관사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의 배우자 명의로 된 분양아파트(0000.00월 입주예정)에 대해 매입자금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0000년 ~ 0000년 기간 동안 직원 00명에 대한 관사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보증인에 대한 소득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지원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 ① 주택 매입자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관사지원금 및 일시상환 대상 관사지원금 000,000,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 개인 명의로 계약된 관사는 법인 명의로 재계약하시기 바라며,(시정)
- ② ◆◆◆◆◆ ○○○는 환동해산업연구원 「인사규정」 제39조에 따라 ■■■■ 처분 하시고, ●●●●●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하 ‘환동해산업연구원’ 이라 한다)에서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고자 환동해산업연구원 「관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고, 세출예산(사무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관사 임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I. 예산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II.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환동해산업연구원 「관사관리규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환동해산업연구원 관사를 설치·이용·관리함에 있어서 관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관사라 함은 법인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원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부지,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환동해산업연구원 관사 계약담당자는 관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원이 이미 사무실 소재지 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직원의 거주목적이 충족된 경우 추가로 해당 주택을 관사로 임차할 필요가 없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관사 계약상대자와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여 직원 개인에게 관사 임차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0000년 ~ 0000년 기간 동안 ○○○ 등 00명의 직원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사무관리비(임차료)로 편성된 예산으로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또한 △△△의 경우 0000.00.00. 관사(시설) 임차비로 사용가능한 사무관리비(임차료)를 집행하여 법인 명의의 관사를 임차하는 대신 관사 임차비 00,000천원을 지원하는 등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였다.

그 이후 해당 관사 거주자인 △△△은 0000.00.00. 제정된 「관사 지원금 운영 지침⁷⁾」에 근거하여 0000.00.00. 기 지원받았던 관사 임차비 00,000천원에 대해 주택 매입비 대부로 변경하여 해당 주택을 매입하였다.

7) 관사 지원금의 금액은 4천만원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10년 단위로 하며 연장할 수 있음

[표] 관사 임차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성명	임차일자	임차금액	소유자		거주자	임차주택 소재지	비고
				당초	변경			
합계	00명		000,000					
1	△△△	0000.00.00.	00,000	●● ●●	△△△	△△△	□□군 ▣▣읍면	'00.00.00. 매입
2	●●●	0000.00.00.	00,000	○●○ (배우자)		●●●	□□군 ▣▣읍면	
3	○●○	0000.00.00.	00,000	○●○		○●○	□□군 ▣▣읍면	
4	□□□	0000.00.00.	00,000	□□□		□□□	□□군 ▣▣읍면	

* 환동해산업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사 임차비 관리 부적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I. 예산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II.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환동해산업연구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은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된 관사 임차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였을 경우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문제가 있는 관사의 임차비를 상환 받아야 했다.

그런데 환동해산업연구원 ▣▣▣▣▣▣ ▣▣▣▣▣▣ ▣▣▣ 팀장은 0000.00.00. 예

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된 관사 임차비에 대한 내용이 담긴 “□□ ■■■
■■ ◆◆ ▨▨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였고, 위 [표]와 같이 ◆◆◆ 등
00명이 거주하는 관사의 임차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0000. 00월 감사일 현
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 ① 주택 매입자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 □□□, □□□, ○○○의
관사지원금 000,000,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
- ② ㉠㉠㉠㉠㉠ ▼▼▼를 환동해산업연구원 「인사규정」 제39조에 따라 ●●●
처분하시고, ●●●●● □□□을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